

충청북도수영장설치·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수영장설치·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장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”를 “충북체육고등학교장이 겸임토록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